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유형문화재외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명을 파주시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로 한다.
- 나. 문화유산이라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전통문화, 예술, 역사, 학술,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와 문화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파주시문예진흥위원회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안제2조제1호제2호제3호)
- 다. 시장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안제3조)
- 라. 유형·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시장은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안제4조제2항제3항)

마. 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문화·예술, 역사·학술·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를 보호 관리함으로써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제6조제1호제2호)

바.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 문화원, 문화유산관련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안제7조)

사.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다.(안제8조)

아.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현상변경한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제19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함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주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역사, 학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당초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명을 파주시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로 변경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문화재 뿐만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안건으로 제출된 본건의 경우 그 내용에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있는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지난 5월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기금조성목표금액이 30억원으로 되어있어 파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안건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기존에 보류되어 있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처리가 선행되어야 금번에 상정된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류되어 있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먼저 다룬후에 본건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